

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?

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
취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직활동지원금을
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지원대상
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
- 만 18~34세 청년
-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



가구소득

» 기준중위소득(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) 120% 이하

- 부·모·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소득수준 확인 예정
- 본인 희망 시 형제·자매 추가 가능

<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표 >

(단위: 원/월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중위소득(A)	1,757,194	2,991,980	3,870,577	4,749,174	5,627,771	6,506,368
기준중위소득 120% (B=A×1.2)	2,108,633	3,590,376	4,644,692	5,699,009	6,753,325	7,807,642
건강보험료 (C=B×0.03335)	70,323	119,739	154,900	190,062	225,223	260,385

졸업·중퇴 후 기간

- 신청시점 기준, 고등학교·대학교·대학원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
- 졸업 학점 이수자 (졸업에 필요한 학점 요건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, 유예생) 도 신청 가능
- 방송통신대학교, 사이버대학교, 학점은행제는 재학 중이어도 참여 가능

미취업자

-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시 미취업으로 간주
-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

지원내용

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,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

- 유홍·도박·성인용품 등과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(홈페이지 참고)한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



-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
-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'취업성공금(50만원)' 지급

지원절차

- 하반기 구직활동 청년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역별·시기별로 월별 인원을 배정하여 선정
-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

신청방법

- 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에서 신청 가능

신청 바로가기 [QR코드](#) »»



- 예비교육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: [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](#) 선택

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

- 가구소득, 재학여부, 구직활동계획서 등 자격요건 심사
- 전월 말일까지의 신청분을 심사하여 매월 10일 결과 안내

예비교육
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, 선택한 고용센터에서 예비교육 필수 수강(1회 오프라인)
 - (1부) 제도개요,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, 청년정책 활용방법 등
 - (2부) 구직활동 요령 등을 포함한 취업특강, 현직자 멘토링 등

카드별급

-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 선택(신한·하나 중 선택) 및 예비교육 수강 후 카드 발급

구직활동 보고서 제출

-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제출 필수
 - * 취·창업 여부, 구직활동,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등을 작성

